

# Travel

the world in BUFS

2027  
재외국민전형

부산외국어대학교 에서  
세계를 여행하다!

2026 QS ASIA 대학평가

외국인교원  
비율 부산 울산경남 1 위

2014~2025년 대학정보공시

해외취업률  
12년 연속 전국 1 위

해외 협정대학 수

534개 [2026년 4월 기준]

2025년 해외파견  
교환 학생 수 359명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SI분야) 사업 최종 선정

총 71.25 억 원 지원  
교육부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사업 선정

교육부 [교육부-대교협 주관]

글로벌 인재 양성

언어  
중심 AI

교육 선도 대학

BUFS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2027학년도 수시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2025년~2026년

##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 CONTENTS

I. 서류 및 원서접수 절차	3
II.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4
III. 전형일정	5
IV. 전형방법	5
V. 지원자격	6
VI. 자격심사 기준	7
VII. 서류제출	9
VIII. 면접고사	12
IX. 지원자 유의사항	14
X. 공통서류 서식	
1 수학기간 기록표	17
2 외국 학교과정 소개서	18
3 학력조회 동의서	19
4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에 대한 위임장	20

■ 입학문의 : 051-509-5308   ■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s://enter.bufs.ac.kr/>



■ 바로가기 Click :



Instagram



Facebook



NAVER



Kakao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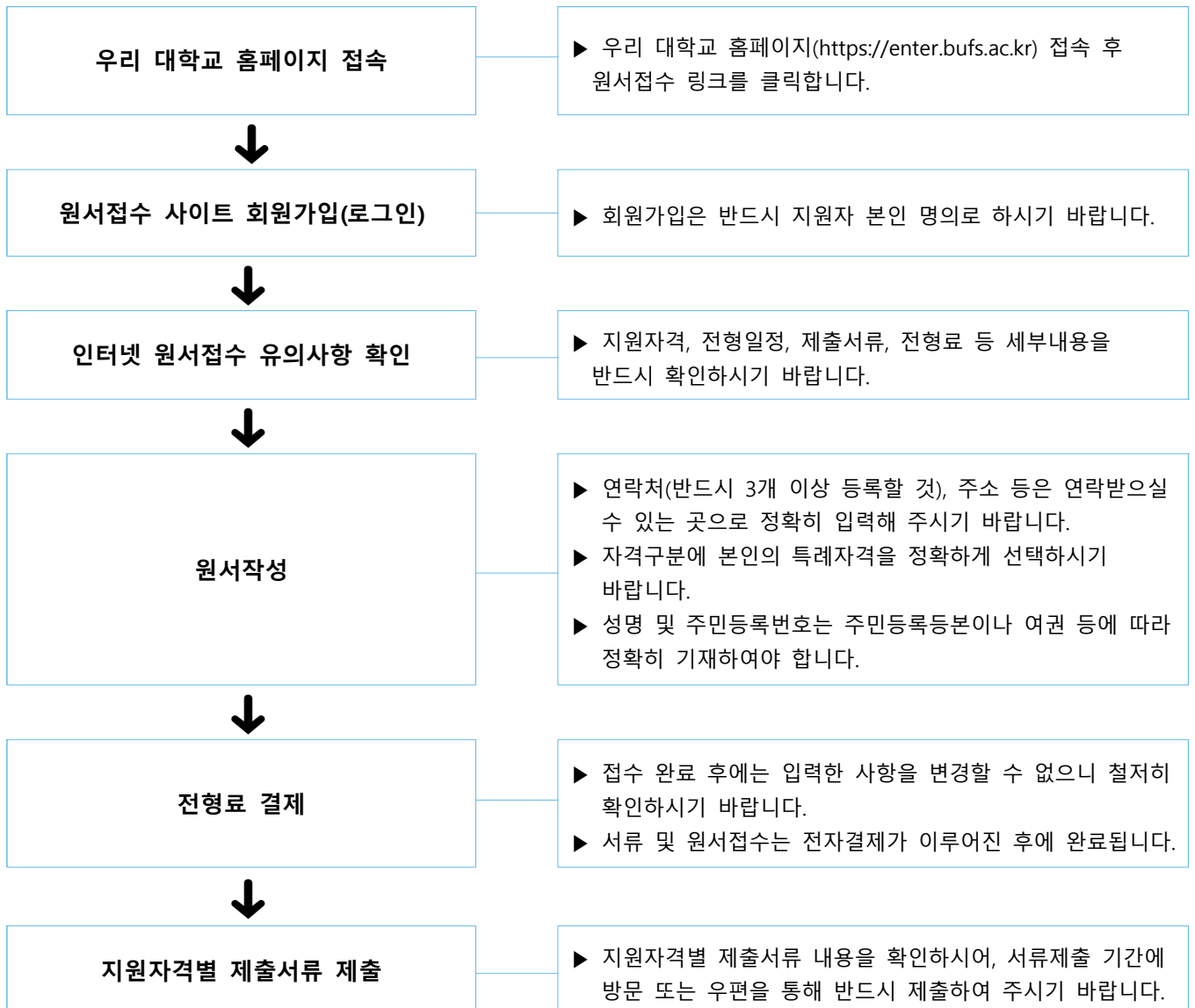
# I. 서류 및 원서접수 절차

## 1. 접수기간 : 2026. 9. 7.(월) ~ 11.(금) 18:00까지

-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접수만 실시하며, 교내 창구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나. 인터넷 원서접수는 24시간 가능함.(단, 접수 마감일에는 18:00에 접수를 종료함)
- 다. 외국 국적 지원자 유의사항

- 외국인은 국제교류팀에서 별도 선발하므로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은 해당부서에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 연락처 : 국제교류팀 ☎ 051-509-5326 / 홈페이지 <https://cia.bufs.ac.kr/cia/>

## 2. 접수방법(접수절차)



## Ⅱ.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 1. 모집인원

- 가. 모집인원 제한 있는 재외국민: 우리대학교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함.  
 나. 모집인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우리대학교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집함.

단과 대학	개설전공		모집단위	2027 입학정원	모집 단위별 최대선발 가능 인원	
					입학정원 2% 이내 모집단위 10% 이내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유럽 미주 대학	영어학부	영어전공 <b>교직</b> 영어통번역전공	통합모집 (자유전공)	1,320	20 이내	
	프랑스어전공					
	독일어전공 <b>교직</b>					
	스페인어전공 <b>교직</b>					
	포르투갈(브라질)어전공					
	이탈리아어전공					
	러시아어전공					
유럽지역통상전공						
아시아 대학	일본어융합학부	한일문화콘텐츠전공 <b>교직</b> 비즈니스일본어전공 일본IT전공				
	중국학부	중국어전공 <b>교직</b> 중국지역통상전공				
	태국어전공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전공					
	베트남어전공					
	미얀마어전공					
	인도어전공					
아랍전공 <b>교직</b>						
튀르키예어전공						
사회 과학 대학	사회복지전공					
	상담심리전공					
	한국어교육전공					
	외교전공					
	국제개발협력전공					
	글로벌문화비즈니스전공					
	경찰행정전공					
사이버경찰전공						
상경 대학	경영전공					
	회계전공 <b>교직</b>					
	국제마케팅전공					
	국제무역전공					
	경제금융전공					
	국제사무전공					
	국제문화관광전공					
호텔·컨벤션전공						
디지털 미디어 · IT 대학	글로벌창업융합전공					
	영상콘텐츠융합전공					
	글로벌웹툰콘텐츠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정보보안전공					
	AI빅데이터전공					
	전자·인공지능융합전공					
스마트에너지·환경전공						
International College	K문화교육전공					
	Global Studies(English Course)					
사회과학 대학	사회체육전공		50	5 이내		
	스포츠재활전공		50	5 이내		
상경대학	항공서비스전공		50	5 이내		
<b>총계</b>			<b>1,470</b>	<b>20</b>	<b>입학정원 제한없음</b>	

1. 통합모집(자유전공)으로 입학한 경우 전공 배정 시기에 희망전공 선택을 100% 보장함
2. 개별모집 전공(사회체육전공, 스포츠재활전공, 항공서비스전공)으로 입학한 경우에도 2학년 진급시 희망전공 선택 보장(전공자율선택제 적용)
3. K문화교육전공은 외국인유학생 전담임
4. Global Studies 전공은 100% 영어로 진행됨
5. **교직**은 2027학년도 교직과정(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6. 모집단위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구조조정 및 향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원서접수 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 Ⅲ. 전형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6. 9. 7.(월) ~ 11.(금) 18:00까지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주)진학어플라이
서류제출		2026. 9. 7.(월) ~ 18.(금) 17:00까지		우)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관리팀(F303)
면접고사		2026. 10. 24.(토)		고사장 및 입실시간 안내 : 2026.10.16.(금)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조회
합격자 발표		2026. 12. 4.(금) 15:00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합격증 출력		2026. 12. 4.(금) 15:00 이후 합격자 발표순으로 계속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6. 12. 21.(월) 09:00 ~ 23.(수) 16:00까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별도의 예치금이 없으며, 온라인 '문서등록'으로 대신함
추가합격자 발표 (미등록 총원)	1차	발표	2026. 12. 23.(수) 20:00	<b>【개별 통보하지 않음】</b> - 발표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합격자 문서등록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b>【개별 전화 통보함】</b>
		등록	2026. 12. 23.(수) 20:00 ~ 24.(목) 16:00까지	
	2차	발표	2026. 12. 24.(목) 19:00	
		등록	2026. 12. 24.(목) 19:00 ~ 25.(금) 12:00까지	
	3차 이후	발표	2026. 12. 25.(금) ~ 29.(화) 18:00까지 ※ 우리 대학교 일정에 따라 수시로 발표	
		등록	2026. 12. 25.(금) ~ 30.(수) ※ 개별 추가합격 통보 시 안내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 12.(금) 16:00까지		부산은행 가상계좌 납부

- 합격자의 등록의사는 온라인 문서등록으로 판단하며, 문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입학)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등록금 고지서는 수험생에게 개별 발송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기간 내에 부산은행 본인 고유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만 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등록금 전액을 먼저받는 장학생(실납부액 0원)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록금고지서 조회 화면에서 「전액장학생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전형일정은 우리 대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국외 송금으로 등록금을 입금하는 경우, 환율에 의하여 납입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우리 대학교 재무팀 (☎ 051-509-5382) 으로 반드시 별도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함
- 전형일정은 우리 대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전형 일정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Ⅳ. 전형방법

#### 1. 전형요소 및 선발방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배점(비율)	전형총점	선발방법	세부내용
	면접			
해당 모집단위	300점(100%)	300점	전형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함	「면접고사(p.12)」 참조

- 면접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함
- 면접 결시자, 서류 미제출자 및 미비자, 지원자격 미달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함

#### 2. 수능 최저 학력기준

- 해당사항 없음

#### 3. 동점자 처리기준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 V. 지원자격

### 1. 모집인원 제한(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있는 재외국민

공통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초·중등교육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li> <li>-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예정)한 자</li> </ul> </li> <li>• 국외근무자 자녀로서 아래 세부 자격요건의 <b>이수기간(학생)</b>, <b>재직기간(국외근무자)</b>, <b>체류기간(학생·국외근무자·배우자)</b>을 <b>모두 만족</b>하는 자</li> </ul>	

구분	세부 자격요건
국외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b>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li> <li>• 국외근무자의 근무형식은 국외 상근자로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li> <li>• 우리 대학교는 제출 서류 구분에 따라 국외근무자를 다음과 같이 세부 구분함 : 국외파견재직자, 현지취업자, 현지자영업자, 선교사</li> </ul>
국외근무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b>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b>,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b>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b>(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b>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b> 수료한 자</li> </ul>
국외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은 <b>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일자와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b>. (국외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지원자격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li> <li>• 학생이 <b>학기 개시일</b>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li> <li>-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증명서 상 입증 필요)</li> </ul> </li> <li>• 학생이 <b>중간에 편입학</b>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li> </ul> </li> </ul>
국외체류일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국외 이수기간 동안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b>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b>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li> <li>• 학생이 <b>학기 개시일</b>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li> </ul> </li> <li>• 학생이 <b>중간에 편입학</b>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li> </ul> </li> <li>•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아래 절사</li> </ul>

※ 부모의 국외 근무·체류기간은 학생의 국외 중·고교 재학기간(국외재학 인정기간)동안 근무 및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2. 모집인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자격요건	학력요건
전 교육과정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과정(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li> </ul>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지고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자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li> </ul>

## VI. 자격심사 기준

###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교육과정)이 인정되는 교육기관(학교)이어야 함
  - 외국소재 유학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나.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제외
  - 국내 소재 교육부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는 외국고가 아닌 국내고 이수로 간주
  - 국내 소재 학력미인정 외국인학교과정 이수는 국내 및 국외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다. 외국학교 소재지 : 원칙적으로 부모의 근무(거주)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에서의 수학확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 학교과정 인정 기준

- 가. 재학기간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중심으로, 외국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대학에서 판단함
- 나.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함
  - 외국의 1~6학년 과정은 초등학교, 7~9학년 과정은 중학교, 10~12(13)학년 과정은 고등학교로 간주
  -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 1~6학년 과정은 초등학교, 7~9학년 과정은 중학교, 10~12(13)학년 과정은 고등학교로 간주하며, 제출된 학적서류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다.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음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음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단,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는 학제가 12년 미만이라도 초·중·고 전 과정을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이수하였다면 지원 가능함.
  -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대입시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학제기간(12년)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의 경우 초·중·고교 과정 12년의 기간 중 부족한 만큼 해당국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자격을 부여함.
- 라.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 마. 외국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외국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재외국민(정원외2%) 대상) 근무 및 체류기간 인정기준

- 가. 부모의 국외 근무·체류기간은 학생의 국외 중·고교 재학기간(국외재학 인정기간)동안 근무 및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나.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 인정 기간에 동일국가에서 근무,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인정함
- 다. 지원자격 심사는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라. 해외 근무 3년 조건은 부와 모의 해외근무를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음
  - 예시 : 부의 2년 해외 근무와 모의 1년 해외 근무의 합산 인정
- 마. 편부모/재혼 등 가정의 지원자는 해당 지원 자격 기간 당시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제출 서류를 심사하며, 부모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기준으로 심사함

#### 4. 월반/조기졸업 및 중복 인정 기준

- 가.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해당 내용 증빙 제출 필수)
- 나.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예시1)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5. 기타

-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 제출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근무·국외거주·체류기간을 인정함
- 나. 제출서류 심사과정 또는 입학 이후 우리나라 학제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제98조)에 의한 학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학교, 직장 등)에서 발급한 서류만 반영함.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라.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마. 입학허용기간 제한은 없음
- 바.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은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함

## Ⅶ. 서류제출

### 1.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법률사무소에서 원본에 대한 공증을 받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이 가능함(입학 확정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 외국에서 발급한 모든 증명서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없는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함)
  - (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한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학적서류는 별도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공증번역하지 않은 서류는 구비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서류 미제출로 처리됨)
- ※ **제출 시 아래의 순서대로 정리 및 순번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함**

서류명	세부지원 자격		모집인원 제한 있는 재외국민				모집인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국외근무자 자녀				전교육과정 이수	북한 이탈주민
			국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선교사		
1. 수학기간 기록표 <본교 서식1>			○	○	○	○	○	○
2. 외국 학교과정 소개서 <본교 서식2, 재학한 국외 모든 학교에 대해 작성>			○	○	○	○	-	-
3. 외국학교 학력 조회 동의서 <본교 서식3, 재학한 국외 모든 학교에 대해 작성>			○	○	○	○	-	-
4.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학생 각 1부) <본교 서식4>			○	○	○	○ (학생)	-	-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6. 초·중·고 재학증명서			○	○	○	○	-	-
7. 초·중·고 성적증명서			○	○	○	○	-	-
8.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	-	-
9.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	○	○	○ (학생)	-	-
10. 여권 사본(부모·학생 각 1부)			○	○	○	○ (학생)	-	-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각 1부)			○	○	○	-	-	-
12.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School Calender)			○	○	○	-	-	-
13. 부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 (국외근무경력 명시)			○	○	-	○ (교회 재단발급)	-	-
14.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	-	-
15. 세금 납입 이력 및 납부 영수증			-	○	○	-	-	-
16.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	-
17.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	-	○
18.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	-	-	-	-	(해당자)
19.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	-	-	(해당자)

## 2. 제출서류 관련 세부 안내

서류명	세부내용
1. 수학기간 기록표 <본교 서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대학교 소정 양식 1~4(홈페이지 참고)</li> <li>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및 제출</li> <li>해당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오류작성, 기재착오, 누락 또는 판독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li> <li>서식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li> </ul>
2. 외국 학교과정 소개서 <본교 서식2>	
3. 외국학교 학력 조회 동의서 <본교 서식3>	
4.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학생) <본교 서식4>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전입)일, 졸업(전출)일, 재학기간(입학~졸업) 및 재학 학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li> <li>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Seal)이 있어야 함.</li> <li>성적우수 등으로 월반, 조기졸업을 한 경우 이에 관한 해당 증빙 첨부</li> <li>국내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함.</li> <li><b>졸업예정자의 경우 2027.02.18.(일본 3월말)까지 반드시 졸업증명서 제출</b></li> </ul>
6. 초·중·고 재학증명서	
7. 초·중·고 성적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 또는 모 기준으로 부모·지원자의 관계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li> </ul>
9.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10. 여권 사본(부·모·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효한 여권의 사본을 제출</li> </ul>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장이 발급</li> <li>부·모·지원자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명시</li> </ul>
12.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School Cale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기 개시/종료일이 명시된 자료</li> <li>중·고교과정 중 재학한 외국학교에 대한 일정표를 학년도별로 제출</li> <li>단,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상 학년별 재학기간이 연/월/일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li> </ul>
13. 부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 (국외파견재직자, 현지취업자, 선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사(인사권자)에서 발급한 서류</li> <li>소속부서, 직위, 근무국가명, 국외 근무기간 명시</li> </ul>
14.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취업자, 현지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정부 발급, 해당국 근무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li> </ul>
15. 세금 납입 이력 및 납부 영수증 (현지취업자, 현지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자격 취득기간 동안의 세금납부 증명 서류를 제출</li> <li>현지취업자: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또는 국외 세금 납부영수증</li> <li>현지자영업자: 국외 세금 납부영수증명서</li> </ul>
16. 제3국 수학기정서(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자가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A4용지에 학생 인적사항, 제3국 수학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확인(미제출시 해당기간은 재외국민 자격기간 산정 시 제외)</li> </ul>
17.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9.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발급</li> </ul>
18.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 발행</li> <li>국내고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필수)</li> </ul>

## 3.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기간 : 2026. 9. 7.(월) ~ 9. 18.(금) 17:00까지** (등기우편은 서류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 (**토·일·공휴일은 방문제출 불가**)
- 제출 서류의 앞면 좌측하단에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예) 전교육과정 이수자 / 통합모집(자유전공) / 53112001 / 김외대
- 제출처 : 우)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관리팀 ☎ 051-509-5308)
- 서류 제출 확인 : 제출 후 3~4일 뒤에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enter.buufs.ac.kr>)를 통해 확인 필수
- 지원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의 지연도착, 구비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두절(연락처 오기재 등),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예 필요한 서류 및 원본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기재된 학적 및 거주사실 등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한 사실 또는 부정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4.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제출 안내

##### 가. 서류제출 안내

※ 지원자는 외국에서 발행한 모든 증명서에 대해 아래의 1) ~ 2) 중 가능한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단,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발행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음)

- 1)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은 서류
- 2)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한 해당국 영사 확인도 가능함)

##### 나. 아포스티유 발급 및 제출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 가능함

#### [ 아포스티유 협약 ]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아포스티유 협약국 안내 : [www.0404.go.kr](http://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아포스티유&영사서비스→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참조)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 안내 : <https://www.hcch.net/en/instruments/specialised-sections/apostille> 참고

##### 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6.4.29. 기준 129개 국가 및 지역)

대륙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31)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키르기스스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0)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2)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31)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15)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라. 영사확인서

- 대상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출신의 지원자
- 발급기관 :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 증빙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서'를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간에서 발급받아 제출

##### 마. 기타

- 각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한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한 학적서류는 별도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불요)

## Ⅷ 면접고사

### 1. 대상 및 면접방법

대상 전형	일자	면접유형	1인당 면접시간	면접방법
• [정원외]재외국민	10. 24.(토)	대면 면접	10분 내외	다수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개별 구술평가 ※ 1인 입장 1인 진행 : 통합모집(자유전공), 사회체육전공, 스포츠재활전공 ※ 4인 입장 1인 진행 : 항공서비스전공

**[ 면접고사 안내 ]**

- 고사장, 면접시간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10. 16.(금)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enter.bufs.ac.kr>)에서 조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에 따른 면접고사 시행 ]**

- 우리대학교의 면접고사는 수험생의 고교 교육과정 내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
- 지원자의 학부·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인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답변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및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활동을 중심으로 답변해야 함
- ※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수상실적, 자격증, 인증시험 등)과 지원자 가족·친인척, 인적사항을 포함한 답변은 불가하며, 답변하더라도 평가에는 미반영 처리함

**[ 블라인드 평가 ]**

- 면접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됨
- 수험생의 개인정보 및 출신고교정보 그리고 학부모의 인적사항을 면접관에게 미제공(블라인드 처리)함

### 2. 면접문항

- 모집단위 구분 없이 공통문항 2개를 사전공개함
- 사전공개한 2개 문항에 대하여 면접관이 질문을 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인성, 성장역량을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함
-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받을 수도 있음

평가영역	면접 공통문항 내용
인성	① 자신의 고교생활 중에서 나눔, 배려, 협력, 소통, 봉사, 성실성, 갈등극복, 리더십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이나 실천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야기 해보세요
성장역량	② 우리 대학에 지원하게 된 이유나 동기가 된 경험을 이야기 해보세요

### 3. 진행순서



### 4. 평가영역 및 등급별 점수

평가영역	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별 점수차
인성 및 성장역량	1	300	
	2	290	10
	3	280	10
	4	270	10
	5	260	10
	6	210	50

## 5. 유의사항

- 면접고사 시작 시간은 전형유형 및 분반에 따라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운영함
- 우리 대학교 내 복수지원으로 인해 면접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조정 가능
  - ※ 입학관리팀 ☎ 051-509-5306 으로 개별 연락 시 가능
- 동일 전형 내 동일 모집단위의 면접이 2개 이상 분반으로 운영되는 경우, 분반 간 평가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 자체 성적 산출공식을 적용한 보정점수를 반영함
  - ※ 평가위원 및 분반 간 점수편차 완화를 위해 표준편차 기반 보정방식을 적용함  
(표준편차를 활용한 분반 간 평가편차 보정)
-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 **면접고사에 참여하더라도 서류 미제출자 및 미비자, 지원자격 미달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함.**
- 면접결과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IX. 지원자 유의사항

## 1. 원서접수

### 가.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enter.bufs.ac.kr>)에 접속하여 접수

### 나.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원서의 수정, 접수취소 및 전형료 반환이 불가함
- 원서접수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하였다더라도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입학원서 오류작성, 기재사항 누락,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한 서류 미제출, 제출 서류의 내용미비 또는 판독불가, 기타 수험생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우리 대학교의 처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형기간 중 연락 가능한 본인, 부, 모 등의 연락처를 입력하여야 하며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합격사실 통보 불가 등)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음  
※ 연락처 수정요청 :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입시도우미 → [원서수정요청] 입력
- 전형료 및 등록금 환불을 위해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환불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수험생의 잘못된 입력으로 인해 전형료 및 등록금 환불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음
-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2. 전형료 환불 안내

### 가. 전형료 안내

전형	전형료	전형료 환불	비고
(정원외)재외국민	55,000원	해당사항 없음	원서접수 대행수수료(5,000원)는 전형료에 포함

### 나. 전형료 환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제1호 ~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전형료 반환 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5,000원)는 제외하고 반환함**
- **지원자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환불 처리되므로 환불 계좌란에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야 함**

## 3. 등록 포기(온라인 문서등록 취소)

- 온라인 문서등록 취소 기간 : 2026. 12. 23.(수) ~ 2026. 12. 29.(화) 16:00까지
- 온라인 문서등록 취소 절차
  -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문서등록 취소 사이트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온라인 문서등록 취소, 환불 사유 입력 및 문서등록 포기 클릭
-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4.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함
- 우리 대학교의 전형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수시의 모든 전형간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수시모집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접수 취소 처리)  
※ 6개 전형에는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이 해당됨.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성인학습자 전형은 제외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 다.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등록 또는 예치금납부 등)해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등록, 예치금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처리 함

#### 5.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합격여부를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합격자는 홈페이지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컴퓨터 조작 미숙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지 않을 시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함(등록의사가 없는 합격자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최초합격자 및 추가합격자(1~2차)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만 발표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전형별 모집단위의 예비합격 후보자 순위로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 추가합격자(3차 이후)는 공동원서접수시스템의 지원자 정보란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하며, 발표 시 전화연락 두절(3회 이상 통화 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충원합격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우리 대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
- 예비합격 후보자는 연락처 변경이나 장기간 출타 시에는 반드시 입학관리팀으로 통보하여야 함 ☎ 051-509-5426

#### 6. 지원자격 상실, 불합격, 합격 취소, 입학취소 관련 사항

- 지원자의 착오, 지원방법 위반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지원자격 상실에 따른 원서접수 취소, 면접·실기고사 응시 불허 및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등)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기한 내에 전형별 서류 미제출자, 면접·실기고사 결시자, 부정행위자,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을 말소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또한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교에서 아래의 사유로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 대리시험, 경쟁률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작성, 위변조 등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27년 2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예정증명서 제출 후 최종합격한 경우, 반드시 최종 증명서를 2027.02.18.(목)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단, 일본 등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의 경우 3월 말까지 제출)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우리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 지원자 정보 : 성명(보호자 포함), 성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이메일, 환불계좌번호, 이메일, 국외수학 및 체류기간(보호자 포함),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등
  - 학교정보 : 고교명, NEIS코드, 졸업(예정)연도, 전화번호, FAX 번호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학사, 장학, 통계업무, 신입생 예비대학 및 오리엔테이션, 학과별 공지 안내, 기타 안내,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에 합격자 조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함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 8.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 가.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

- 우리 대학교에 입학원서 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23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학생부제출 불필요
  - 2004학년도 졸업자('05.2.) ~ 2022학년도 졸업자('23.2.)는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신청 시스템'에서 자료를 직접 검증·생성하여 대학에 온라인 제공 신청해야 함
    - 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생성 신청 완료시 자료 제공 인증번호' 부여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신청 시스템 URL: [apply.neis.go.kr](https://apply.neis.go.kr)**
    - ② 원서접수 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료 제공 인증번호' 입력 및 검증
  - 2023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또는 학생부 온라인 제공 불가능자는 서류제출 기간에 '대입전형용 학생부' ('24.2.졸업~'27.2.(조기)졸업예정) 민원서류 출력물을 직접 제출해야 함
  - 2004학년도 졸업자('05.2.) ~ 2022학년도 졸업자('23.2.) 중 온라인 제공을 희망하지 않거나 생성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서류제출 기간에 '학생부II' ('05.2.졸업 ~'23.2.졸업) 민원서류 출력물을 직접 제출해야 함

### 나. 검정고시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북한이탈주민만 해당)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각 시·도교육청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https://www.neis.go.kr>)의 검정고시 대입 전형자료 제공 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신청해야 함
- 온라인 제출 신청 지원자는 입학원서 작성 시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야 함
- 2018년도 제1회 ~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 지원자는 온라인 제공 가능
- 2017년도 이전 및 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 지원자는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서류제출 기간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9. 기타 유의사항

-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합격 대상자들보다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추가합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장애학생은 대학 방문 시 장애학생도우미 제도를 통해 캠퍼스 안내를 지원받을 수 있음
- ※ 장애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 관련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051-509-5162)로 문의

## X. 공통서류 서식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65, Geumsaem-ro 485beon-gil, Geumjeong-gu, Busan, Korea. 46234

## LETTER OF CONSENT (학력조회동의서)

To whom it may concern,

\*국외학교공식명칭(Official Name of the School you attended abroad)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_\_\_\_\_).

I have applied t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Busan, Korea and have agreed to allow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Enrolled Name: *	_____
Student ID Number: *	_____
Date of Birth: *	_____
Date of Admission (transfer): *	_____
Date of Graduation (withdrawal): *	_____

Sincerely yours,

\* \_\_\_\_\_  
Signature

\* \_\_\_\_\_ - \_\_\_\_\_ - 2026 (MM-DD-YYYY)  
Date

\*should be written by applicant only

School Address	:	(	)
School E-mail Address	:	(	)
School Phone No.	:	(	)
School Fax No.	:	(	)

- 재학한 외국학교가 2개교 이상인 경우 각 학교마다 1부씩 작성합니다.  
 - 팩스 및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예) 한국 82-(0)51-509-5308]

<서식 4>

- 하단 양식 붉은 박스 안의 내용만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5. 5. 30.> (앞쪽)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약칭: 사실증명신청서, 약호:A322)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b>발급대상자</b>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address in English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 ]미포함 No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Address in English <input type="checkbox"/> 표기 Yes [ ]미표기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부터(from) . . . . . 까지(to)				
용도 (Purpose)				

<b>신청인</b>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홍길동**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OO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OO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OO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년(Year)	월(Month)	일(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 / m<sup>2</sup>) 또는 중질지(80 g / m<sup>2</sup>)]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본인은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fee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of refusal to consent to the verific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